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3. .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동법을 포함하여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에 ‘무장애 관광’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에 정의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고, 추진 사업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안 제48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 ----- -----. 1. ~ 12. (현행과 같음) <u>13. “무장애 관광”</u> <u>이란 관광활동에</u> <u>어려움이 있는</u> <u>사람들이 물리</u> <u>적·사회적 장벽</u> <u>없이 접근가능한</u> <u>관광을 말한다.</u>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생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 ----- ----- ----- ----- -----

통령령 또는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6. (생 략) <u><신 설></u>	----- ----- ----- -----. 1. ~ 4. (현행과 같 음) <u><신 설></u> 5. · 6. (현행과 같 음) 7. <u>무장애 관광(관 광의 물리적 · 사 회적 장벽을 제거 함으로써 관광활 동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 다)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 에 관한 사업</u>	----- ----- ----- -----. 1. ~ 4. (개정안과 같음) <u>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 한 사업</u> 5. · 6. (개정안과 같 음) <u><삭 제></u>
--	---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06
----------	------

발의연월일 : 2024. 11. 27.

발 의 자 : 최보운 · 서천호 · 김미애
정성국 · 김선교 · 박수영
김상훈 · 한지아 · 최수진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진흥 등을 위하여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 장애인은 약 263만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900만명으로 약 1,163만명이 이동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광지별 맞춤형 환경 조성, 장애 유형별 안내체계 구비 등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장애 관광’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사업 추진이 필요함.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무장애 관광 환경의 조성 및 관광자원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4항제7호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동법을 포함하여 「관광기본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에
‘무장애 관광’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하여, 동 개정안에 정의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고, 추진 사업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등).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무장애 관광”이란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가능한 관광을 말한다.

제48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12. (현행과 같음) 13. <u>“무장애 관광”이란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가능한 관광을 말한다.</u>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생 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 략) <u><신 설></u> 5. · 6. (생 략)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u> 5. · 6. (현행과 같음)